

재가장기요양 급여비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9(2023.12.2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아래 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추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기준)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기준)		분류	금액(원)	본인부담금 (15% 기준)	
30분 이상	16,630	0.15	2,495	120분 이상	41,380	0.15	6,207	210분 이상	60,530	0.15	9,080
60분 이상	24,120	0.15	3,618	150분 이상	48,250	0.15	7,238	240분 이상	66,770	0.15	10,016
90분 이상	32,510	0.15	4,877	180분 이상	54,320	0.15	8,148				

[표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표4]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소정금액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소정금액에 50% 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